

2016년도 (재)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(안)

의안 번호	122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제 출 자 : 광진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개정
 -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의 대상 :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

나. 출연의 필요성

-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자립을 위한 신사업 추진 지원,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,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

다. 출연금 결정

-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16년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결정

3. 참고사항

- 관련규정
 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 -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(기본재산의 조성)

관련 법령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(해산)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행정자치부 질의 응답 내용

□ 검토배경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**미리 지방의회 의결**을 얻도록 규정('14.5.28.개정, '16회계년도부터 적용)
- 출자·출연 **사전의결**에 대한 자치단체 질의에 대해 **우리부의 해석기준**을 정립하여 자치단체에 통보

□ 질의 및 검토의견

- **(질의1)** 출자·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·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,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취지는 **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?**

⇒ **(답변)** 출자·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 **절차를 강화하여 출자·출연을 엄격히 제한함**으로써 **선심성·낭비성 출자·출연을 방지**하려는 취지임

※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,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생 (감사원지적 '11.3)

- **(질의2)** 미리 지방의회에서 **출자·출연 의결**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?

⇒ **(답변)**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**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**하는 것으로, **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**

- 출자·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, 국가정책과의 연계성,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지방의회 심의를

-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,
-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
 - 다만, 지방의회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

○ (질의3) 매년 출자·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?

⇒ (답변)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, 법정 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

○ (질의4) '미리'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(혹은 지방의회 제출 전)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?

⇒ (답변) 예산편성 전에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,

-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(혹은 출자·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)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·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

< 지방재정법 내용 >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